

생활 속의 법률 합의의 효력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과 관련해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A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든가 아니면 “A는 * * * 사고와 관련하여 B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A는 B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재된 합의서가 그 경우이다.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있을까? 있다면 그 효력은 어느 범위까지일까?

처리한 사건 중에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도급회사였는데, 하도급 계약서 말미에 “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 도급회사와 하도급 회사 간에 현장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일종의 합의라고 할 것인데, 위 합의만으로 도급회사는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일단 형사상의 책임을 살펴보자. 하도급회사가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하도급 회사에게는 당연히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도급회사 역시 위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물론 그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 공사를 직접 맡은 하도급회사는 물론이고 시행사인 도급회사 역시 당

시 붕괴사고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물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형사상 책임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형별권의 발동이므로 사인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형별권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간의 합의가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할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그것이다. 친고죄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과거에 성범죄가 친고죄였고 현재는 모욕죄 등이 그러한 범죄유형에 속한다.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교통사고 범죄 중 일부 및 명예훼손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아닌 경우 합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¹⁾처분사유 중 하나가 되며, 양형(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후 형을 정하는 과정)단계에서는 감경사유가 된다.

민사상 책임은 어떠한가? 이 사건에서 “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회사가 책임을 진다.” 라는 도급회사와 하도급회사 간의 합의 사실을 가지고 도급회사는 근로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만약 도급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²⁾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해서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공동으로 근로자 유족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즉, 위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합의는 도급인과 하도급인 양 당사자 간에 대내적 효력은 있지만 그 외에 하도급인의 근로자 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대외적 효력은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고 대신 그 배상한 금액을 하도급인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될 것이다(물론 대부분의 하도급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³⁾

이 사건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인 수급인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며,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근로자의 사망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노무도급⁴⁾’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태이다.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급인이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라지만, 하도급인이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만약 도급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상태이므로 도급인이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랄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인데 모두 수긍할만하다. 어떤 방법이든 쌍방이 수긍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랄 뿐이다. ☺

- 1)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 2)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따라서 도급인은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막대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4) 하도급인의 책임이 도급인의 책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법리로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한다.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이호진

전화번호 : 02-6203-0703, 이메일 : ephitor@naver.com

- 사법연수원36기
- 서울중앙 국선전담변호사
-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 변호사(전)
- 現)대검찰청 미래기획단 위원